

결정문

사건번호: KR-2400255

신청인: 두나무 주식회사

피신청인: Mr. Char

분쟁 도메인이름 : < 증권플러스.com; 증권플러스비상장.com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두나무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디에프타워 8층, 12층, 15층, 17층, 18층)

피신청인: Mr. Char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1404 121호)

분쟁 도메인이름은 “증권플러스.com; 증권플러스비상장.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미국에 소재한 소재한 NameCheap Inc.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24년 4월 17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4월 18일 사건을 접수하였다.

센터는 2024년 4월 26일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NameCheap, Inc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24년 4월 26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센터는 2024년 4월 30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otp112112@gmail.com)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24년 5월 20일 임을 통지하였다. 하지만 해당 이메일(otp112112@gmail.com) 주소는 반송되었다. 또한 2024년 5월 2일

등기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주소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측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는 2024년 5월 23일 센터의 보충규칙에 따라 이진수 변리사를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24년 5월 23일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24년 5월 23일 1인 행정패널을 구성하고 이를 양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이 사건의 행정패널은 2024년 6월 4일 신청인에게 "증권플러스" 문자에 대하여 상표권을 주장하는 추가적인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은 동년 6월 11일에 추가 진술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4년에 『증권플러스』란 '주식시세 정보제공 및 주식거래'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식정보 제공 및 거래 앱으로 상위 랭킹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다. 또한 『증권플러스』를 포함한 여러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비상장』이란 명칭으로 '주식시세 정보제공 및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웹사이트로도 제공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모두 2024년 1월 30일에 등록되었고, 최근까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주식시세 정보제공 및 주식거래'와 관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재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i) 분쟁 도메인이름은 UDRP (이하 "정책"이라 한다) 상 신청인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분쟁 도메인이름 <증권플러스.com>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텍스트 부분인 『증권플러스』이 동일하며, 분쟁 도메인이름 <증권플러스비상장.com>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텍스트 부분인 『증권플러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웹 페이지에서 신청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등록상표 권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고 신청인의 등록상표를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iii) 분쟁 중인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일반 수요자나 사용자가 혼동을 일으키게 할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인의 등록상표를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웹 사이트의 구성을 보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홈 페이지와 동일한 UI/UX 및 페이지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즉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웹 페이지와 동일한 화면 구성을 통해 일반 수요자들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신청인의 홈 페이지로 오인하게 할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웹페이지는 회원 가입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주식대금을 편취할 부정한 목적이 명백하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5.1 절차 진행 언어

UDRP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a)항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절차 진행 언어는 등록 약관의 언어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상황에 따라 패널은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신청인이 제출한 도메인 이름 등록 약관의 언어는 영어이다(갑제 6호증의 1). 따라서 행정절차의 언어는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대한민국 소재의 한국법인이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절차 진행 및 결정의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면

서 한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본 패널은 분쟁 도메인이름 자체가 한국어로 이루어진 단어로 구성된 점과 그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의 내용이 모두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한국어에 익숙한 언어임이 인정되어 규칙 제11조 (a)항에 따라 모든 교신과 서면을 포함하여 행정절차와 결정의 언어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을 결정한다 ([WIPO Jurisprudential Overview 3.0](#) 섹션 4.5.1 참조).

5.2 판단 및 이유

정책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하에서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성

정책 제4조 (a)(i)에서 규정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미등록 사용 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WIPO Jurisprudential Overview 3.0](#) 섹션 1.1; [WIPO/D2000-0040 \(phonenphone.com\)](#) 등 참조]. 다만 등록 상표가 아닌 경우, 신청인은 해당 상표를 지속적으로 독점 사용하여 무역이나 상거래에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어 해당 상표가 그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게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WIPO/D2002-0815 \(quakeaid.com\)](#) 등 참조].

신청인은 『증권플러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상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상표등록번호 제40-1678021호와 제40-1695106호(이하 '등록상표'라 한다)에 대한 등록 증거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정책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표권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WIPO Jurisprudential Overview 3.0](#), 1.2절 참조).

그러나 위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증권플러스』가 결합하여 등록이 허락된 상표이다.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은 도형을 제외한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증권플러스』의 식별력 인정여부와 문자『증권플러스』만으로 구성된 미등록 출원상표 제 40-2022-0165156호(이하 '출원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문자『증권플러스』에 대해 2014년 첫 출원 때부터 최근 출원상표에 이르기 까지 출원『증권플러스』는 식별력이 없는 “증권”과 “플러스”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해 새롭고 특별한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거래업계에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본 패널이 출원상표에 대한 특허청의 등록 허락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정책에 따라 본 사건에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확립된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재량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특허청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에서『증권플러스』란 용어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관념되지 않으며, 그 의미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설사 “증권더하기”로 이해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지 상상하고 연상하여 나오는 암시적 의미일 뿐 직접적으로 나오는 의미나 관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식별력이 부족한 단어에 “플러스”가 결합된 상표가 전체로서는 직접적인 성질표시가 아닌 암시적 표시로 인정된 다수의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인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비록 문자상표『증권플러스』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각각의 단어 “증권” 및 “플러스”가 개별적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지만, 전체로서 결합되어 식별력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증권플러스』는 전체로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본 패널은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한다.

『증권플러스』문자는 금융상품에 추가적인 요소가 포함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며, 이는 풋 옵션, 콜 옵션 등의 파생상품이 추가된 주식(a stock plus a put) 과 같은 예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예: 거래 플랫폼, 시세 정보 제공)의 향상을 “암시”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증권플러스』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유가증권’을 지칭하는

「증권」이란 단어와, '~을 더한', '더하기', '이익'을 의미하는 영문 전치사 또는 명사 'plus'의 한국어 발음 「플러스」가 결합된 용어로, 직관적으로는 **주식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stock plus a put"은 '풋 옵션(put option)이 결합된(plus) 주식(stock)과 같은 파생상품'을 나타낸다.

이 용어가 **주식과 파생상품** 자체를 넘어 **주식시세 정보제공이나 주식거래 서비스, 금융/주식/옵션 및 파생상품 거래업이나 거래장소**의 성질이나 특징으로 인식되려면, 「플러스」라는 용어를 수학적 연산 또는 '증가시키다'라는 동사(action)으로 연상시켜야 한다. 또한 "증권"과 결합하여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어떤 추가적인 가치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용어는 직접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용어와 연관된 서비스나 제품의 특성을 연상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은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비슷한 것들과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증권플러스』 문자는 **용어는 제공하는 추가적인 가치나 서비스를 통해 특정 금융 서비스를 상징할 수 있어 자타 식별력을 갖는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용에 의해 그 식별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신청인은 2014년부터 『증권플러스』를 '주식시세 정보제공 및 주식거래' 모바일 앱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023년 10월 까지, 『증권플러스』 앱이 650만건이 다운로드되었으며, 이 앱을 이용한 누적 거래액이 240조원을 돌파하였고, 이와 같은 증권플러스 플랫폼을 통한 증권사 매출액이 366억에 이르렀으며, 증권플러스 앱은 주식 앱 월 실사용자 기준 및 증권/투자 관련 앱 신규 설치 순위 4위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다. (갑제7호증의 1, 제10호의 1 내지 제12호증의 1).¹

비록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잠시 카카오증권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나(갑제7호증의 1), 거의 10년간 지속적으로 독점적으로 『증권플러스』가 신청인의 앱과 그를 통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서 주식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인구가 신청인의 『증권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하였다는 사실(국

¹ 2024. 06. 11. 추가 제출한 증거의 호증 번호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거의 호증 번호에 이어 다시 수정한다. 따라서 2024. 06. 11. 추가 제출한 증거의 제 1호증은 제7호증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내 주신인구 약 1,400만명 대비 650만 건이 앱이 다운로드)도 인정된다. 또한 검색어 트렌드에서도 주식시장 점유율 1위 앱인 키움증권의 “영웅문S”와 비교할 때 2020년 이후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증권플러스』가 신청인의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시하는 알려진 상표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증권플러스』 문자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 <증권플러스.com>은 “~.com”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표와 완전히 동일하며, 또 다른 분쟁 도메인 이름 <증권플러스비상장.com>에서 “비상장”은 증권을 설명하는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고, 호칭과 외형이 분리되기 쉬워서 신청인의 상표와 극히 유사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패널은 분쟁 도메인 이름이 정책 제4조(a)(i)항에 따라 신청인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정책 제4조 (a)(ii)에 따른 증명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피신청인 도메인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최소한 피신청인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일응 추정(a prima facie)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분쟁 도메인 이름이 피신청인의 상호가 아니고 피신청인이 상표나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적시하고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피신청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음이 일응 추정되어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WIPO Jurisprudential Overview 3.0](#) 섹션 2.1. ; [WIPO/D2000-1106](#) (swiregroup. com)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관련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의 취지를 볼 때,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상표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적법한 이해관계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선택된다.

본 패널이 직권으로 『증권플러스』 문자 상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증권플러스』 문자는 오직 신청인만 상표 출원을 시도하고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운영된 웹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의 상호로 개시된 “증권플러스”나 “증권플러스비상장”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갑 제4호증의 2 및 제5호증의 2).

또한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은 현재 비활성 상태이나, 신청인피신청인출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한 비상업적 또는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내용과 배치, 구성, 디자인이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 국내 1위 비상장주식, 장외주식 거래 \(ustockplus.com\)](http://ustockplus.com)”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마지막으로 정책 제4조 (a)(iii)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 사건 분쟁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텍스트 부분 “증권플러스”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피신청인의 등록 도메인이 연결된 웹페이지 내에서 피신청인의 등록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콘텐츠의 구성, 레이아웃의 구성 및 웹 상의 디자인까지 동일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피신청인의 사이트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제출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이와 같은 사칭 사이트를 통해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를 기망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목적과 주식대금 상당을 편취할 부정한 목적이 분명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법상 사기 등의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하

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갑 제13호증의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증권플러스"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피신청인의 등록 도메인에 연결된 웹페이지에서 등록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증권플러스 비상장 - 국내 1위 비상장주식, 장외주식 거래 \(ustockplus.com\)](http://ustockplus.com)"의 콘텐츠 구성, 레이아웃 및 디자인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인하게 하는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제출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또한, 이러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를 기망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며, 주식대금을 편취할 부정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사실도 제시하였다 (갑 제13호증의 1).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일은 모두 신청인이 『증권플러스』 앱을 출시한 2014년보다 약 10년이 지난 2024년 1월 30일이다. 이는 시장에 『증권플러스』 앱이 상당히 알려진 2020년보다 약 4년이 지난 이후이며, 등록상표의 등록년도인 2019년과 2021년 및 출원상표의 출원연도인 2020년보다 훨씬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선의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선택했다면 『증권플러스』라는 명칭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증권플러스』를 선택한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악의가 추단된다.

더욱이 신청인의 앱이 시장에서 주목을 끈 『증권플러스비상장』까지 도메인 이름으로 선택하여 선점하였고, 한글로 구성된 분쟁 도메인이름 자체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할 뿐 아니라 분쟁 도메인이름이 사용된 웹사이트의 내용과 디자인, 구성은 누가 봐도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인될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추단되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할 가능성을 조성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자사 웹사이트로 유인하려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정책 제4조 (b)항의 (iv); [WIPO Jurisprudential Overview 3.0](#) 섹션 3.1 및 3.1.4 참조).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D. 소결

따라서 신청인은 정책 제4조 (a)항에 따른 세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였다.

6. 결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본 패널은 정책 제4조와 규칙 제15조 및 센터의 보충규칙 제10조에 따라, 분쟁 도메인이름 <증권플러스.com> 및 <증권플러스비상장.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辨理士
李 鎮 秀

1인 행정패널

이 진 수

결정일: 2024년 6월 14일